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·이학영·이원택

어기구 • 윤준병 • 주철현

정을호 · 박희승 ·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	립	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
등) ① ~ ③ (생 략)	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
		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
	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
		<u>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</u>
		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
		들어야 한다.
④ (생 략)	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